#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2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박용갑・이병진・허성무

이해식 · 김영호 · 권칠승

윤준병 · 소병훈 · 박상혁

강유정 · 서삼석 · 조승래

황정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인프라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음.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이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며, 산모의 산후우울증 경험률 또한 68.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이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 산후조리 원이 전무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필수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는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산후조리원의 공급실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1. 산후조리원이 없고, 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시・군
- 2.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운영할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시·군
- 3. 민간산후조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권역 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휴 · 폐업한 민간산후조 리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매입 및 시설 개 ·보수를 통해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공공 산후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공

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라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지정·운영하는 경우
- 2.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 ①・② (생	략)	조리원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국가는 출생 후 임산부와 신
		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산후조리원의 공급
		실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설치・지정・운영하여야
		<u>한다.</u>
		1. 산후조리원이 없고, 타 시·
		<u>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시·</u>
		2.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위
		<u>탁·운영할 분만산부인과가</u>
		<u>있는 시·군</u> 2 미기사호기이의 그기 때느
		3. 민간산후조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휴ㆍ폐업한
		민간산후조리원 또는 일정규

<신 설>

<신 설>

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매입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공공 산후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라 권역별 공공산 후조리원을 설치·지정·운영 하는 경우
- 2.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